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7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2,87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2021.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6,269,0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주)C로부터 원주시 D 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후, 2021. 1. 7. 피고에게 그 중 비계, 거푸집 설치 등의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531,603,000원(부가세 별도)에 'E'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당시 E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거래할 수 없어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고, 피고 명의로 원고와 재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입처, 매출처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도록 하였다.

나. 2021. 5.경 (주)C과 원고 사이에 위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와 E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329,336,7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산하기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E에게 정산금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정산금 329,336,700원 중 237,827,000원은 목공인건비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92,509,700원만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다. 당초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2021. 5.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거래금액(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세액 포함, 이하 같다) 합계 355,48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E가 자재 등을 매입한 여러 거래처로부터 피고 앞으로 거래금액 합계 184,088,1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하였으나, 일부 거래처와 E 사이에 분쟁이 생겨 일부 거래처에서 피고 앞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거래금액 합계 157,943,000원 부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거래금액 합계 355,48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E의 자재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26,145,100원(= 당초 발행금액 184,088,100원 - 일부 취소금액 157,943,000원) 부분에 관해서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어, 피고가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인 329,355,900원(= 매출 세금계산서 355,481,000원 - 매입 세금계산서 26,145,100원) 부분에 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것이 그대로 피고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 및 소득세 세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 6. 30. 당초 원고에게 발행한 거래금액 합계 355,48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거래금액 26,145,100원(=

공급가액 23,768,272원 + 부가세액 2,376,827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부가세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당초 원고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해 버림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20,319,16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E에게 피고 운영의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피고는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대외적 거래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거래처와 E 사이에 분쟁이 생겨 일부 거래처에서 피고 앞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가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거래처의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생 취소가 부당하다면 해당 거래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또는 명의차용자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당초 원고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것은 재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원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5.경 E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금 329,336,700원(= 공사대금 299,397,000원 + 이에 대한 10%의 부가세액 29,939,7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보통의 경우에는 원고가 하수급인이 원고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피고가 2021. 6. 30. 자신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당초 원고에게 발행한 거래금액 합계 355,48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거래금액 26,145,1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신고 과정에서 부가세액 27,562,873원(= 정산합의에 따른 부가세액 29,939,700원 - 피고가 새로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액 2,376,827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27,562,8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8.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정산금 일부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21. 5.경 E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금 329,336,700원(부가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중 35,949,890원 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대외적인 거래당사자인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등 참조).

(3) 2021. 5.경 원고와 E 사이의 정산합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된 상황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액수를 확정짓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당시에 원고가 E의 실제 비용 지출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정산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패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